힘내라 대한민국	보도참고자료	배 포	2020. 9. 28.(월)
		담 당 과	식품기준기획관 식품기준과 유해물질기준과
식품의약품안전처		과 장	이강봉(☎043-719-2411) 신영민(☎043-719-3851)
		연 구 관	윤상현(☎043-719-2414) 김용무(☎043-719-2416) 장미란(☎043-719-2421) 정지윤(☎043-719-3852) 엄미옥(☎043-719-3853) 김은정(☎043-719-3854)

김치류 등에 식중독균의 통계적 검사기준 적용

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고시개정안 행정예고

□ 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이의경)는 김치류 등 6종의 식품에 대한 식중독균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**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고시 개정안**을 9월 28일 **행정예고** 합니다.

○ 이번 개정안은 저위해성 식중독균에 대해 통계적 검사기준*을 도입하여 검사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며,

* 통계적 검사기준 : 시료 1개만을 검사하는 종전의 방식과 달리, 5개의 시료를 검사하고 검출된 시료수와 검출균수를 따져 적부를 판정하는 방식

- 김치류, 절임류, 조림류, 복합조미식품, 식초, 카레분 및 카레 등 **식품 6종에 대한 식중독균(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)을 대상으로 합니다.**

* (현행) g당 100 이하 → (개정) n=5, c=2, m=100, M=1,000

○ 그 밖의 주요 개정내용은 **▲반가공 커피제품의 미생물규격 개선** ▲상동나무열매 등 **식품원료 8종 신규 인정** **▲어유 중 중금속 기준 개정** **▲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·개정** 등입니다.

- 식품제조업체간에 거래되는 것으로서 미생물 제어공정을 거쳐 제품화되는 반가공 커피에 대해서는 세균수와 대장균군 규격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.

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- 식용 근거가 확인된 상동나무열매와 수산물 7종*을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목록에 추가하였습니다.

  * 노랑코홍어, 두점갑오징어, 빨강오징어, 창끝갑오징어, Chaceon biocolor(꽃게류), Idiot rockfish(볼락류), Northern shrimp(새우류)

- 어유의 '비소' 기준을 인체 위해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 '무기비소' 중심으로 관리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.

  * (현행) 비소 0.1 mg/kg 이하 → (개정) 무기비소 0.1 mg/kg 이하

- 국내·외에서 신청한 가스가마이신 등 농약 27종, 톨트라주릴 등 동물용의약품 4종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신설 또는 개정하였습니다.

□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한편, 안전과는 무관한 규제는 해소하는 방향으로 식품기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.

○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(www.mfds.go.kr> 법령·자료> 입법/행정예고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개정(안)에 대한 의견은 2020년 11월 27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〈참고〉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검사

Q1. 통계적 개념의 미생물 검사 기준 도입이 필요한 이유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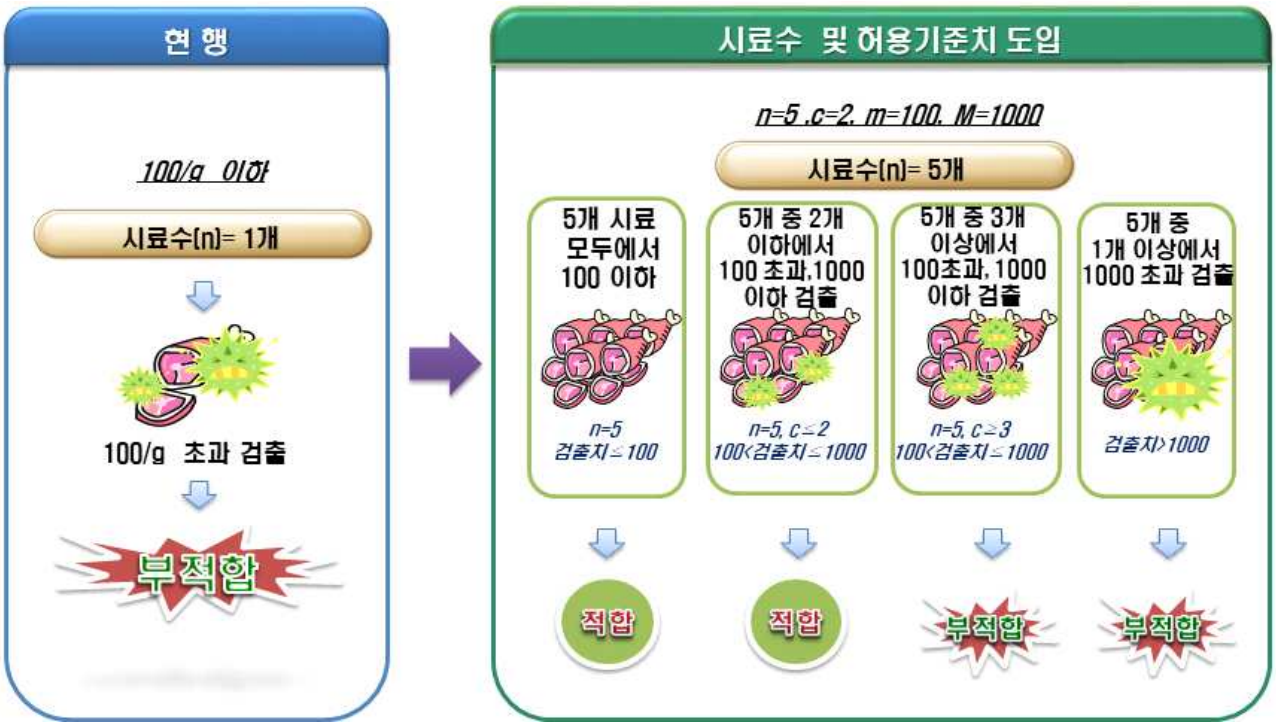
A1. 시료 중 미생물 오염은 균일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, 1개의 시료를 검사하는 것보다 다수의 시료를 검사하는 방식이 검사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.

예시) 전체 시료 중 10%만 오염되어 있는 시료의 경우, 1개 시료 검사 시 검출 확률은 10%이지만, 5개 시료 검사 시 41%로 검사의 정확도가 향상됨

Q2. 금번 개정되는 n=5, c=2, m=100, M=1,000의 의미는?

A2. 종전 1개의 시료로 판정하는 방식이, 5개의 시료를 검사하여 아래와 같이 적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.

* (현행) g당 100 이하 → (개정) n=5, c=2, m=100, M=1,000



n = **검사 시료수**

c = 최대허용 **시료수**, 허용기준치(m)를 초과하고 최대허용한계치(M) 이하인 시료의 수로서 결과가 m을 초과하고 M이하인 시료의 수가 c 이하일 경우에는 적합으로 판정

m = **미생물 허용기준치**로서 결과가 모두 m 이하인 경우 적합으로 판정

M = **미생물 최대허용한계치**로서 결과가 하나라도 M 초과하는 경우는 부적합으로 판정